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3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·벌금·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- 5)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- 6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횟수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 : 만원)

위 반 행 위	해당법조문	과태료금액
가.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	법 제39조제1항제1호	
(1) 승인가한(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 날)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한 자		50
(2) 승인가한(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 날)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승인을 신청한 자		100
(3)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		200
나.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	법 제39조제1항제2호	
(1) 1차 위반시		50
(2) 2차 위반시		100
(3) 3차 이상 위반시		200

다.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) 신고기한(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날)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) 신고기한(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날)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) 허위로 신고한 자 4)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39조제1항제 3호	30 70 200 200
라.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) 신고기한(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)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) 신고기한(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)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) 허위로 신고한 자 4)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39조제1항제 4호	30 70 200 200
마.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고를 기간 이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(1) 신고기한(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)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(2) 신고기한(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)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(3) 허위로 신고한 자 (4)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39조제1 항제5호	30 70 200 200
바.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) 신고기한(선임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)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) 신고기한(선임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)의 다음날을 기산일로	법 제39조제1항제 5호	30 70

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) 허위로 신고한 자 4)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		200 200
사.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) 신고기한(변경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)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2) 신고기한(변경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)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3) 허위로 신고한 자 4)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39조제1항제6호	30 70 200 200
아.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1) 1차 위반 시 2) 2차 위반 시 3) 3차 이상 위반 시	법 제39조제1항제7호	50 100 200
자.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(1) 1차 위반시 (2) 2차 위반시 (3) 3차 이상 위반시	법 제39조제1항제8호	50 100 200
차. 삭제 <2015.12.15.>		
카.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(1) 1차 위반시 (2) 2차 위반시 (3) 3차 이상 위반시	법 제39조제1항제9호	50 100 200